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대학 내 청년층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신규 선정 및 사업 전환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참여 희망 대학의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I.신규선정 II.일반전환 III.교차전환으로 구분

신청방법	개요		
I. 신규선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를 말함		
II. 일반전환	○ ‘일반전환’은 다음의 4가지 경우를 말함		
	현재 운영 사업		전환 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 국고 1억원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 국고 2억원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 * 국고 1억원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 국고 2억원 지원
※ 일반전환 신청시, 기존 사업 운영 잔여 기간 동안 운영 가능			
III. 교차전환	○ ‘교차전환’은 다음의 2가지 경우를 말함		
	현재 운영 사업		전환 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 국고 1억원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 국고 4.5억원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 * 국고 1억원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 국고 4.5억원 지원
※ 교차전환 신청시, 기존 사업 운영 잔여 기간 동안 운영 가능			

I. 신규 선정

〈1〉 공모 주요내용 및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 전체 ○○개교 이내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2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신청자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이력 없는 신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최대 지원기간 도래로 지원 종료된 대학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신청기준	△ (일반형) 재적생 1천명 이상 △ (거점형) 재적생 7천명 이상이어야 함 * 대학알리미 공시 정원내외 재적생 기준(캠퍼스 재적생 포함)
사업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4. 2월 *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최대 5년 성과 우수시 최대 6년)
지원내용	△ (일반형)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2억원(66.7%), 대학·자치단체 1억원(33.3%) 매칭 △ (거점형) 총 사업비 7.5억원 중 4.5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4.5억원(60%), 대학·자치단체 3억원(40%) 매칭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접수기간 접수방법	△ '23. 2. 9.(목) 17:00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월 중)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2〉 모집공고 세부내용

- **(사업목적)**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
- **(사업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전문 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 **(선정규모)** 전체 ○○개교 이내
 - * 기존 사업 일반 전환, 교차 전환, '22년 사업 성과평가 후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 등에 따라 잔여 예산 범위 내 신규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일반형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지원(대학·자치단체 33.3% 매칭)
거점형 사업비 7.5억원 중 4.5억원 지원(대학·자치단체 40% 매칭)
 - *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이나, 대학·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운영대학은 4년차부터 정부지원비율 5%p씩 감액, 전체 사업비는 반드시 유지
 ※ '최초 3년 연속' 우수평가 대학의 경우 감액비율의 인센티브를 적용(2.5%p씩 감액)
 ↳ 해당 인센티브는 '기간 중 3회 우수 평가시 추가 1년 사업비 지원'과는 별도임

<연차별 정부지원비율>

	1~3년차	4년차	5~6년차
거점형	60% (4.5억원)	55% (4.125억원)	50% (3.75억원)
3년 우수평가	60% (4.5억원)	57.5% (4.3125억원)	55% (4.125억원)
일반형	66.7% (2억원)	61.7% (1.851억원)	56.7% (1.701억원)
3년 우수평가	66.7% (2억원)	64.2% (1.926억원)	61.7% (1.851억원)

- **(사업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4. 2월

* 최대 지원기간은 5년,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

▶ (성과 저조대학)

* (일반형) 사업기간(5년) 중 2회 미흡 → 지원 중단

* (거점형) 사업기간(5년) 중 2회 미흡 → 일반형으로 전환 → 추가 '미흡' 평가시 지원중단

▶ (성과 우수대학) 일반형 대학이 사업기간(5년) 중 '우수' 평가 시 거점형으로 확대, 3회 '우수' 평가 시 추가 1년 사업비 지원(예산 범위 내)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 외에 본교 캠퍼스는 별도 신청 불가하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제2, 제3 캠퍼스 중심의 사업 운영 가능(예시: 학교본부가 있는 제1캠퍼스에 보건의료계열 등이 집중 소재하여 사업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 (일반형) 재적생 1천명 이상, (거점형) 재적생 7천명 이상

* 공고일 기준 대학알리미 공시 최신 자료 활용(정원내외)

○ 신청제외 대상

- '21.12.31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교육부 발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붙임1 참조>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종료 대학 중 성과평가 결과 성과저조* 대학

* 사업기간(5년) 중 대형사업 '미흡' 3회, 소형사업 2회 '미흡' 평가로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대학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중인 대학으로 '23. 2 사업종료 예정이 아닌 대학

□ **(신청유형)**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 ①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청 ②거점형 특화프로그램 미운영 신청 중 선택하며, 운영 신청 후 심사 탈락 시 자동으로 미운영으로 심사 (원치 않을 시 신청서 상 별도 의사 표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 대학의 공동(컨소시엄) 참여·운영 제한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시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 위탁하는 턴키방식 운영은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전문기관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는 것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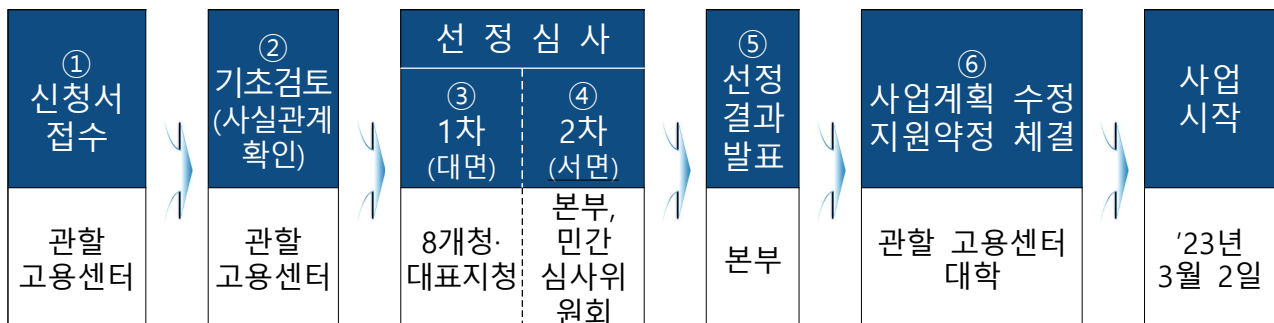
- **(신청기한·접수)** '23.2.9(목) 17:00까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1-1)
* 서식 1~4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4, 해당하는 경우)
- ⑤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 ⑥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⑦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공문·협약서 등 형식 불문)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우편은 2.9.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
- ③ 1차 심사: 대면심사 방식(PT 발표는 지양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인터뷰 실시)
- ④ 2차 심사: 1차 심사 추천의견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사업계획 등 종합선정심사*
* 1차 심사 최저기준(가점 제외 100점 중 70점) 통과 시에 한함
** 방역상황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⑤ 우선협상 대학교 발표(2월 27일 예정, 변동 가능)

※ 사학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가급적 심사 시 제외

- **(문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담당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최영욱 사무관 ☎ 044-202-7416)
명진아 주무관 ☎ 044-202-7567)

II.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유형 전환

〈1〉 공모 주요내용 및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 전체 ○○개교 이내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신청 자격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운영 ▴ (신청자격)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 운영대학 ▴ (기준) 재적생 1천명 이상(대학알리미 정원내외 공시 기준)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운영 ▴ (신청자격)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 운영대학 ▴ (기준) 재적생 7천명 이상(대학알리미 정원내외 공시 기준)
사업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4. 2월 * <u>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하며,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최대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u>
지원내용	▴ (일반형)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2억원(66.7%), 대학·자치단체 1억원(33.3%) 매칭 ▴ (거점형) 총 사업비 7.5억원 중 4.5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4.5억원(60%), 대학·자치단체 3억원(40%) 매칭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접수기간 접수방법	▴ '22. 2. 9.(목) 17:00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월 중)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2〉 모집공고 세부내용

□ **(사업목적)**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사업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전문 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 **(선정규모)** 전체 ○○개교 이내

* 기존 사업 일반 전환, 교차 전환, '22년 사업 성과평가 후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 등에 따라 잔여 예산 범위 내 신규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일반형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지원(대학·자치단체 33.3% 매칭)
거점형 사업비 7.5억원 중 4.5억원 지원(대학·자치단체 40% 매칭)

*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이나, 대학·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운영대학은 4년차부터 정부지원비율 5%p씩 감액, 전체 사업비는 반드시 유지

※ '최초 3년 연속' 우수평가 대학의 경우 감액비율의 인센티브를 적용(2.5%p씩 감액)

↳ 해당 인센티브는 '기간 중 3회 우수 평가시 추가 1년 사업비 지원'과는 별도임

※ 사업 유형 전환시에도 전환 후 연차에 따른 감액비율이 적용

<연차별 정부지원비율>

	1~3년차	4년차	5~6년차
거점형	60% (4.5억원)	55% (4.125억원)	50% (3.75억원)
3년 우수평가	60% (4.5억원)	57.5% (4.3125억원)	55% (4.125억원)
일반형	66.7% (2억원)	61.7% (1.851억원)	56.7% (1.701억원)
3년 우수평가	66.7% (2억원)	64.2% (1.926억원)	61.7% (1.851억원)

□ **(사업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4. 2월

* 최대 지원기간은 5년,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

* 일반 전환 사업의 경우 전환 이전 기존 사업의 최대 지원기간(5년)을 초과할 수 없음(성과 우수에 따른 추가 지원시 6년)

▸ (성과 저조대학)

* (일반형) 사업기간(5년) 중 2회 미흡 → 지원 중단

* (거점형) 사업기간(5년) 중 2회 미흡 → 일반형으로 전환 → 추가 '미흡' 평가시 지원중단

▸ (성과 우수대학) 일반형 대학이 사업기간(5년) 중 '우수' 평가 시 거점형으로 확대, 3회 '우수' 평가 시 추가 1년 사업비 지원(예산 범위 내)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 외에 본교 캠퍼스는 별도 신청 불가하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제2, 제3 캠퍼스 중심의 사업 운영 가능(예시: 학교본부가 있는 제1 캠퍼스에 보건의료계열 등이 집중 소재하여 사업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 사업 운영 중이며, '23년에 사업 운영이 예정되어있는 대학

□ (신청유형)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청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 * ①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청 ②거점형 특화프로그램 미운영 신청 중 선택하며, ①신청 후 심사 탈락 시 자동으로 ②미운영 신청으로 심사(원치 않을 시 신청서 내 별도 의사 표시)

□ (신청기한·접수) '23.2.9(목) 17:00까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첨부)

-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1-1)
 - * 서식 1~4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4, 해당하는 경우)
- ⑤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⑥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공문·협약서 등 형식 불문)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우편은 2.9.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
- ③ 선정심사: 서면(본부, 민간 심사위원회)
- ④ 우선협상 대학교 발표(2월 27일 예정, 변동 가능)

Ⅳ.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 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주요 사업 내용

- (인프라) 대학 내 각종 취업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 (서비스) 각종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대학-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일경험 서비스 등 제공
- (정책 전달체계) 청년에게 가장 가까운 정책 전달체제로 청년고용 정책 홍보·안내 및 참여 지원 기능 수행

□ 지원 대상 및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 (지원 항목)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인건비·프로그램비·운영경비)
 - (지원 기간) 학교당 기본 5년 지원*
 - *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2년(미흡대학) ~ 최대 6년(우수대학)의 탄력적 지원
 - (지원 규모) 대학 규모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일반형) 학교당 2억원 지원
(총 사업비 3억원 중 국고 2억원(66.6%), 지자체·대학 자체조달 1억원(33.3%))
 - (거점형*) 학교당 4.5억원 지원
(총 사업비 7.5억원 중 국고 4.5억원(60%), 지자체·대학 자체조달 3억원(40%))
- * 재적생 7천명 이상이면서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별도 선발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요 요 비	인건비 · 사업 유형별 총 사업비의 25% 이상 지출의무	○ 전문컨설턴트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산업체에서 인사 등 HRD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활용 가능 (전일제·파트타임 채용, 비상근 컨설턴트제 운영 등) - 일자리발굴 등 취업지원 전담인력 1인 이상 지정·배치
	운영경비 · 사업 유형별 총 사업비의 5% 이내	○ 센터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 등(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업무추진비는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그램비		○ 경력개발시스템(전산) 개발 및 고도화 - 진로취업정보의 일원화, 비대면 콘텐츠 및 Open-API 방식을 활용(워크넷 등)한 정보 제공 ○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비대면 프로그램 관련 플랫폼·솔루션 등 구축비용 -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 의무화 및 개설·편성에 따른 강의 지원, 학사제도 개편 ○ 일자리 발굴 및 매칭 등 적극적 취업지원 ○ 취업지원 기초·전문 상담 수행 및 여건 조성 ○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진단, 컨설턴트·담당자 등 역량강화교육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자료 구입비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 취업캠프·채용박람회,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일경험 기회 확대 프로그램, 인문계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관련 비용 등 ○ 생활·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지원

□ 주요 기능

- ①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지원기능 통합·연계, 취업 지원 및 전문상담 지원 강화, ②대학 밖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① (대학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 일자리매칭 등 종합 지원

- 진로·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진로·취업지원기능 통합 연계 조직 구축 등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청년의 진로탐색 시기부터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기 경력설계 관련, 생활·심리·적응·경제·학업 등 통합적 상담 요구에 대해 기초상담 제공, 전문가 심층상담 서비스 연계 제공
- 대학 내 기업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일자리 발굴·매칭 강화
- 청년정책 홍보, 정책사업 참여연계 등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필수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 → 전공분야별 중견강소기업 구직정보 제공,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사업 등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취업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제공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② (대학 밖) 고용센터, 청년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 인적·물적 규모확대를 통해 자대생·졸업생 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 확대

※ 주요 사업내용 및 대학일자리센터와의 사업내용 비교는 참고1~3 참조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35)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설치· 운영계획 (15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 대학내 통합상담·진로·취업지원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의 지위(교무위원급 이상), 조직개편 방향 등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위상 마련에 대한 계획이 적절한가? • 대학 진로·취업 전담인력의 정규직 고용 등 안정적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있는가? ▪ 대학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시설(공간), 인력, 전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대면·비대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진로·취업교과목·프로그램, 상담 등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경력개발관리시스템(전산) 구축운영 계획은 적절한가?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20점)	▪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관련 대학의 의지와 비전 • 진로·취업 지원 및 통합상담에 대한 대학의 사업의지와 비전 등이 명확한가? ▪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예산 등 • 청년특화 진로·취업 지원 및 통합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체 인프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자체 유관 조직(전문상담, 진로취업지원)의 규모 및 부서 위상, 인력규모 및 전문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위치 및 접근성, 상담 및 진로취업지원 관련 부문의 대학내 예산 비중 등 ▪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계획 등의 적절성 • 진로·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우수한가? •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 인력(교수-교직원-전문컨설턴트 대상)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 계획 등이 우수한가? ▪ 정부지원사업 수행 능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 유사사업 참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수상경력이 있는가?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강화 (35)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지원 +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35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체계적인 진로·취업 서비스와 연계 통합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청년 특화 진로지원 및 통합상담 서비스 제공 • 진로교과목(필수)의 운영 등을 통하여 청년이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청년특화 통합상담(생활, 심리, 적응, 학업, 경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청년의 직무역량 및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취업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탐방, 직무체험, 현장실습 등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 및 취업연계형 일 경험 프로그램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이 적절한가? •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및 제공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달성 가능한가? • 직무박람회, 직무교육, 현직자멘토링, 취업동아리 지원, 채용박람회, 진로·취업특강 등 청년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기업정보탐색, 산업 및 직종 탐색, 기업정보 및 업·직종정보분석 등 청년의 노동시장 이해 강화 지원계획이 적절한가? ▪ 청년의 경력시기별 맞춤 진로·취업서비스 및 상담 제공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기-구직 시기-입직 및 경력적응기’에 있는 청년(재학 및 졸업 청년)에 대한 진로·취업서비스와 맞춤형 통합상담 제공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가? ▪ 교수, 교내유관부서 등의 진로·취업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지원교수제의 운영 등 교수 및 교직원의 적극적 진로·취업지원 참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학과·전공부문 및 유관 교내부서와의 연계·협력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 기업체(취업 및 일경험처) 발굴·관리와 취업·일경험 매칭 서비스의 제공 • 일자리발굴 등 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활용 계획은 적절한가? • 워크넷 등을 활용한 일자리(채용) 정보제공,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 등의 제공 계획은 적절한가? • 대학 내 기업정보의 통합·관리(DB구축)를 통한 일경험 및 취업처 매칭 기반 마련 계획은 적절한가? • 적극적 취업·일경험 매칭을 위한 사업체 발굴 및 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 채용정보 및 청년구인정보의 관리를 통한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 졸업 이후(최소 2년) 및 취업 이후 사후관리 및 경력초기 적응 지원 서비스 제공 • 재학생 외 졸업생(최소 2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 졸업 및 취업 이후 지속적 정보제공 및 경력초기 적응지원 등 계획은 적절한가?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10점)	청년고용 정책 체감도제고 (10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 수행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 청년의 정부청년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비스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 활동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 청년친화적 청년정책정보 홍보 및 정책설명회 등의 계획은 적절한가? • 온라인 등을 통한 정책정보 지속 제공 등의 계획은 적절한가?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20점)	외부기관 과의 협업 (5점)	▪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업단체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지역 청년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고용센터·자치단체 등과의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운영 관련 역할 분담, 지역단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지역청년 고용서비스 제공 (15점)	▪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지역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이 달성 가능하고 적절한가? ▪ 지역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지역 청년에게 내실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 추진 가능하며 타당한가? • 지역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 및 정책사업 참여 연계 계획이 있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25)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설치· 운영계획 (10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 대학내 통합상담·진로·취업지원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의 지위(교무위원급 이상), 조직개편 방향 등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위상 마련에 대한 계획이 적절한가? • 대학 진로·취업 전담인력의 정규직 고용 등 안정적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있는가? ▪ 대학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시설(공간), 인력, 전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대면·비대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진로·취업교과목·프로그램, 상담 등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경력개발관리시스템(전산) 구축운영 계획은 적절한가?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15점)	▪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관련 대학의 의지와 비전 • 진로·취업 지원 및 통합상담에 대한 대학의 사업의지와 비전 등이 명확한가? ▪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예산 등 • 청년특화 진로·취업 지원 및 통합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체 인프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자체 유관 조직(전문상담, 진로취업지원)의 규모 및 부서 위상, 인력규모 및 전문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위치 및 접근성, 상담 및 진로취업지원 관련 부문의 대학내 예산 비중 등 ▪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계획 등의 적절성 • 진로·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우수한가? •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 인력(교수·교직원·전문컨설턴트 대상)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 계획 등이 우수한가? ▪ 정부지원사업 수행 능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 유사사업 참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수상경력이 있는가?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강화 (35)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지원 +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35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체계적인 진로·취업 서비스와 연계 통합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청년 특화 진로지원 및 통합상담 서비스 제공 • 진로교과목(필수)의 운영 등을 통하여 청년이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청년특화 통합상담(생활, 심리, 적응, 학업, 경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청년의 직무역량 및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취업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탐방, 직무체험, 현장실습 등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 및 취업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이 적절한가? •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및 제공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달성 가능한가? • 직무박람회, 직무교육, 현직자멘토링, 취업동아리 지원, 채용박람회, 진로·취업특강 등 청년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기업정보탐색, 산업 및 직종 탐색, 기업정보 및 업·직종정보분석 등 청년의 노동시장 이해 강화 지원계획이 적절한가? ▪ 청년의 경력시기별 맞춤 진로·취업서비스 및 상담 제공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기 - 구직 시기 - 입직 및 경력적응기’에 있는 청년(재학 및 졸업 청년)에 대한 진로·취업서비스와 맞춤형 통합상담 제공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가? ▪ 교수, 교내유관부서 등의 진로·취업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지원교수제의 운영 등 교수 및 교직원의 적극적 진로·취업지원 참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학과·전공부서 및 유관 교내부서와의 연계·협력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 기업체(취업 및 일경험처) 발굴·관리와 취업·일경험 매칭 서비스의 제공 • 일자리발굴 등 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활용 계획은 적절한가? • 워크넷 등을 활용한 일자리(채용) 정보제공,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 등의 제공 계획은 적절한가? • 대학 내 기업정보의 통합·관리(DB구축)를 통한 일경험 및 취업처 매칭 기반 마련 계획은 적절한가? • 적극적 취업·일경험 매칭을 위한 사업체 발굴 및 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 채용정보 및 청년구인정보의 관리를 통한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 졸업 이후(최소 2년) 및 취업 이후 사후관리 및 경력초기 적응 지원 서비스 제공 • 재학생 외 졸업생(최소 2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 졸업 및 취업 이후 지속적 정보제공 및 경력초기 적응지원 등 계획은 적절한가?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10점)	청년고용 정책 체감도제고 (10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 수행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 청년의 정부청년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비스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 활동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 청년친화적 청년정책정보 홍보 및 정책설명회 등의 계획은 적절한가? • 온라인 등을 통한 정책정보 지속 제공 등의 계획은 적절한가?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20점)	외부기관과의 협업 (5점)	▪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업단체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지역 청년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고용센터·자치단체 등과의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운영 관련 역할 분담, 지역단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지역청년 고용서비스 제공 (15점)	▪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지역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이 달성 가능하고 적절한가? ▪ 지역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지역 청년에게 내실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 추진 가능하며 타당한가? • 지역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 및 정책사업 참여 연계 계획이 있는가?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점)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점)	▪ 계획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 특화프로그램이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일자리 매칭 등 실효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 지역청년 참여 가능성 등 • 특화프로그램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및 지역청년들에게도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가? • 졸업생 및 지역 청년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홍보 계획이 있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서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17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지원 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재적생수	
	대 표 자 (총 장)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일반대, ☐ 전문대		
	컨소시엄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기 관 구 분	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종료(예정*) 대학 () ※ '23년 2월 사업 종료 예정 대학을 말함			
	② 신규대학 ()			
사 업 유 형	① 일반형 () ② 거점형 ()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심사 탈락 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청 전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 ()			
2023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선정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 총장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붙임 : 관련 사업 수행실적				

【붙임】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20				
2021				
2022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전환 지원 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재적생수	
	대 표 자 (총 장)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일반대, ☐ 전문대		
	권소시업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권소시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현재 사업유형	①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대학 ()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 대학 ()			
사 업 유 형	① 일반형 () ※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형의 경우 선택 ② 거점형 () ※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형의 경우 선택			
우리 대학은 전환 심사 탈락 시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사업 운영을 지속함을 인지하며, 2023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유형 전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 총장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계획서(요약본)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최대 2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음

항목		내용
조직·예산·인력 현황		- 센터장의 지위, 직원(전문인력) 수 등을 간략하게 기재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설치·운영 계획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항목		내용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지원 +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	외부기관 과의 협업	
	지역청년 고용 서비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계획서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22.12.31.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20페이지 내외, 증빙서류의 분량은 10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및 서식은 변경 가능

I. 대학 내 취업지원 관련 현황

① 진로·취업지원 관련 교내 부서·기관 현황

명칭	소속기관	주요업무	설치일	설치근거	인원

<대 학 조직도(대 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② 취업지원 관련 대학의 재정배분/활용 현황(인건비, 사업비 등)

※ '2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명, 백만원)

명칭	소속기관	인원	인건비총액	사업비 총액	비고

③ 대학 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센터장의 지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 학위	관련 자격증 (진로취업지원 관련만 기재)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22년도 예 산	대학 총예산 (A)	백만원	취업지원 부서 예산 (B)	백만원	비율 (B/A)	%
운영계획	※ 민간컨설턴트 투입에 따른 기존 취업지원부서 근무인원 정(현)원 임의 조정 방지대책,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4 진로·취업지원 교과목 개설 현황('22년)

○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 학점	개설 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 학점	개설 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진로·취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현황('22년)

○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Ⅱ. 사업추진계획('23.3월 ~ '24.2월)

- ※ 공고문·사업개요 및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23.3월 부터 '24.2월까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목차 등은 변경 가능

① 사업목표

○

-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계획

- ※ 취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등 연계체제 구축(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처장·교무위원급 이상으로 배치)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위치(공간규모, 학생 수, 학교여건 등 고려)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학교측 인력(행정인력·전문인력 등), 집기, 부품 등 편의시설 제공 계획 등
- ※ 청년(재학 및 졸업 청년, 지역 청년)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학교 측의 지원방안

○

-

③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사항, 경력개발시스템 구축·개선 등
- ※ 교수, 교직원, 컨설턴트 등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
- ※ 대학 자체 고용시 장기적으로 전문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 반드시 포함
- ※ 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

-

④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서비스 강화

○ 청년 진로탐색 및 통합상담 지원

- ※ 진로교과목(필수) 운영 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서비스 추진계획
- ※ 진로탐색 및 설계과정에서 청년특화 통합상담(진로, 생활, 심리, 경제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반드시 포함
- ※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등 직무역량 및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계획

○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 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후 대학 내 기업정보의 통합관리, 지역채용 동향 파악, 기업DB 구축 등 활용계획 반드시 포함
- ※ 재학생 등에 대한 취업처 발굴 등 적극적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계획 반드시 포함
- ※ 졸업생(2년이내)에 대한 취업·경력개발·적응 지원 및 일자리 매칭 등 사후관리 및 경력 초기 적응 지원 등 계획 반드시 포함
- ※ 취업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대면·비대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⑤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 청년층 대상 정부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비스 인지도·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 계획 반드시 포함

⑥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 고용센터, 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 경제단체 또는 지역 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고용지원서비스 계획

⑦ 기대효과

○

-

8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작성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특성, 지역 특성, 채용·산업 변화 트렌드 등을 반영한 별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요약)>

※ 요약본은 최대 2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음

항목		내용
프로그램 이름		-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운영 목적		
프로그램 개요		
운영 주체 및 인력 운영 계획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특성화 방안	- 대학·지역 특성 및 채용 트렌드, 산업 변화 등 반영
	지역청년 서비스 제공 계획	-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필수 포함
	타 기관 협업계획	- 필요시 작성
	필요시 항목 추가하여 작성	- 예시) 청년고용정책 연계방안,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
향후 추진 일정		- 분기별 일정 제시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최대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음

※ 필요시 자체적으로 목차 추가하여 작성

<1> 프로그램 운영 목적

○

-

*

<2> 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현황(계획)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계획 작성

○

-

*

<3> 공간 정보 현황(계획)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리적(서비스 제공범위) · 공간적(학내 공간) 정보 계획

<4> 예산 투입·활용 방안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체 예산 운영비·프로그램비 활용 가능 범위 내에서 작성

<5>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

※ 대학 특성, 지역·산업 특성, 채용 트렌드 등 반영한 특성화 방안, 타 기관 협업 계획 등 포함

<6> 지역청년 서비스 제공 방안

※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지역 청년 반드시 포함

<7>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전환 방안

※ 향후 코로나19 완화 혹은 심화 시 대면-비대면 서비스 전환 계획

<8> 향후 추진 일정

※ 분기별, 월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9> 기대효과

예 산 집 행 계 획 서

① 총사업비: 3억원 기준으로 작성 (①+②+③ = 3억원)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①+②+③ = 7.5억원)으로 작성

② 세부 예산내역(지자체 부담금은 자율)

○ 정 부 지원금(①): _____ 천원(_____ %)

○ 지자체 부담금(②): _____ 천원(_____ %)

○ 대 학 부담금(③): _____ 천원(_____ %)

③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정 부 지 원 금	지 자체 부 담 금	대 학 부 담 금	
총 계							
인 건 비	인건비	소계					
	운영경비	소계					
프로 그램비		소계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명	직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

참고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 인프라 구축 - 청년의 진로취업 지원 제반 기능을 청년친화적 공간에서 통합·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 경력관리시스템(전산) 구축·고도화 통해 온라인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특화 온·오프라인(대면·비대면)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 진로·취업지원기능 통합 연계 조직 구축 - 진로·취업지원 관련 부서 및 조직 체계 일원화와 유관 기능 통합연계 체제 구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총괄·조정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 교무위원급 센터장 의무 배치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	▣ 청년의 진로탐색 시기부터 체계적인 경력개발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청년의 진로탐색 및 경력설계 초기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 강화 - 진로취업관련 필수교과목 운영, 진로탐색·경력개발가이드, 취업지원가이드 등 제공 ▣ 청년의 통합적 경력설계 지원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연계·제공 - 청년기 경력설계 관련, 생활·적응·경제·학업 등 통합적 상담 요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 접수 및 기초상담 제공, 전문가 심층상담 연계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청년의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제공 ① 청년의 직무역량 및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제공 - 현직자멘토링, 취업특강, 직무박람회 등 구직역량 강화 위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 업·직종별 직무교육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 취업스터디 등 자기 주도적 경력개발 역량강화 지원 ② 청년의 취업성공 지원을 위한 취업 및 일경험처 발굴·관리 및 매칭 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기업과 업직종 탐색 및 정보분석 등 청년의 노동시장 이해 강화 지원 - 워크넷 등을 활용한 일자리(채용) 정보 제공,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 등의 제공 - 대학 내 기업정보의 통합·관리(DB구축)를 통한 일경험 및 취업처 발굴·매칭 기반 마련 - 적극적 취업 매칭을 위한 기업 및 청년구직자 관리와 지원 ③ 사후관리 및 경력초기 적응 지원 - 졸업 이후(최소 2년) 취업·경력개발·적응 지원 및 일자리 매칭 - 졸업 및 취업 이후 청년특화상담 및 정책연계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취업지원 전담자 배치하여 대학 내 기업정보 취합·관리, 채용 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 취업지원 전담자는 대학 내 분산되어 있는 기업정보(취업처 등)의 통합관리, 교내 채용정보 및 취업정보의 주기적 취합 및 보고 등의 전담 관리 및 일자리 발굴·정보제공·매칭 등 취업지원 업무 수행 - 취업지원 전담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체 등에서 HR 등 관련 업무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기업체, 일자리 정보 발굴 및 관리 등 취업지원 업무에 적합한 인력으로 지정 ※ 취업지원 전담자는 1인 이상 지정(필수)·배치

	<컨설턴트 자격요건>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④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⑤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업무) ⑥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진로지도·취업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 기타 대학에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홍보, 정책사업 참여연계 - 청년층 대상 정부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비스 인지도·만족도 제고 활동 - 청년친화적 정보 홍보 및 청년고용정책사업 참여 연계 - 온라인 등을 통한 정책 안내 및 심층상담 제공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청년 고용거버넌스 활동 수행 - 고용센터, 자치단체, 청년센터,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업·경제단체 등과의 주기적 협의 등을 통한 청년고용 공동·연계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청년 인력 수요·공급 관련 협업·정보 교류 · 지역 청년에 대한 청년고용서비스 및 정책참여 연계서비스 제공 - 지역 청년 대상 찾아가는 청년정책 안내 등 청년정책홍보·설명회 등 실시 - 지역 청년에 대한 취업상담, 직무교육, 취업특강·박람회 등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 지역 청년의 특화상담 요구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심리, 노무 등) 연계 · 기타 대학에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특성, 지역 특성, 채용·산업 변화 트렌드 등을 반영한 별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학교별 자율적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되, 청년 취업역량 강화 · 일경험 · 매칭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예시: 저소득층 청년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 대상 프로그램, 학기중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연계 프로그램 등) - 지역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필수)

	내용
대상	○ 재학생, 지역청년, 졸업생(2년 이내 미취업자)
주요기능	○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전담자 배치하여 대학 내 기업정보 취합·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 심리 등 통합상담 연계지원 → 진로·취업 상담 이외에 생활·심리·적응 등 통합적 상담요구에 대해 기초상담 및 전문상담 연계 지원 ○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연계 ○ 청년고용 지원사업 협력 → 청년고용응원 프로젝트의 참여자 모집·선발 협업, 수료자의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정부 청년고용정책 협업 및 홍보 지원 등 ※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특성, 지역 특성, 채용·산업 변화 트렌드 등을 반영한 별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예시-저소득층 청년 등 지역 취약계층 청년 대상 프로그램, 학기중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연계 프로그램 등)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한함 ※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필수)